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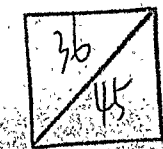
| 의안번호 | 회의차수   | 회의일자         | 결의사항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50   | 제 23 차 | 1985. 10. 17 | 총 개 최 강 라 |

의안 :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일부개정

- 의결사항 : 1.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을 붙임과  
같이 일부 개정한다.
2. 시행일자 : 1985. 11. 1
3. 경과조치 :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취급된 대출금은  
이 규정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본다.

제의관계 : 한국은행법 제 7 조, 제 69 조 및 제 72 조  
법규조항

제의취지 : 「부역금융규정」의 제정으로 종전의 수출금융, 외화표시공급  
금융 및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의 무역금융으로 통합됨에  
따라 농 금융지원을 위한 당행대출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 
본 선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

(참고)

관계법규 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 7 조

- 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,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2 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- ⑥ (생략)

한국은행법 제 69 조

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다음의 업무의 결과로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, 환어음, 가타 신용증권의 재할인, 할인과 매매
- 가 - 바. (생략)

2.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 
가 본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  
나 - 라 (생략)

3. (생략)

한국은행법 제72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 
정한다.

② (생략)

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일부 개정 (안)

| 현행                |      | 개정 (안)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     | 이율   | 구분            | 이율       |
| 1. (생략)           | (생략) | 1. (현행과 같음)   | (현행과 같음) |
| 2. 담보대출           |      | 2. 담보대출       |          |
| 가. 수출어음담보대출       | 연 5% | 가. 무역어음담보대출   | 연 5%     |
| 나. 외화표시 공급어음담보대출  | 연 5% | (삭제)          |          |
| 다. 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담보대출 | 연 5% | (삭제)          |          |
| 라. }              |      | 나. }          |          |
| 마. } (생략)         | (생략) | 다. } (현행과 같음) | (현행과 같음) |
| 바. }              |      | 라. }          |          |
| 3. (생략)           | (생략) | 3. (현행과 같음)   | (현행과 같음) |